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61,000,000	34,830,000
일반회계		957,000,000	28,710,000
특별회계		204,000,000	6,120,000
공기업특별회계		134,300,000	4,029,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85,500,000	2,565,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48,800,000	1,464,000
기타특별회계		69,700,000	2,091,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80,000	20,4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790,000	293,7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500,000	45,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00,000	192,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120,000	33,6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380,000	41,400
	청소사업특별회계	46,500,000	1,395,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30,000	60,900
	수질개선특별회계	300,000	9,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733,79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7,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무수행경비
3. 배상금, 국선번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경비